

2027년 그린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R&D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전남광주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7. 1. 1. ~ 12. 31. *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 가능
- 사업비/사업량 : 미정(보조비율: 특별시 25%, 시군비 35%, 자부담 40%)
*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량/사업비는 반영 예정
- 사업대상 : 전남광주 그린바이오 신고 기업(신고 예정 포함)
- 사업관리 : 전남바이오진흥원 위탁 추진 및 관리
- 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 연구자금 지원, 시험 분석 등 그린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사업(세부내역 붙임 참조)

□ 추진일정

- 예비신청서 제출(대상자 → 시군) : 8. 4. ~ 8. 14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특별시에 추천(시군 → 특별시) : 8. 19.까지
- 사업신청 서류(1차심사) 검토(특별시) : 8월 말
- 발표평가(2차심사) 및 예비 사업자 선정(우선순위) : 9월 초
- 사업 예산 가내시(특별시 → 시군) : 9월 중순
- 특별시 예산 확정 : 12월
- '27년도 사업 시행 : '27. 1. ~ 12.

□ 평가절차

- 서류검토 : 예비신청서 등 서류 구비 여부 및 적정 검토
 - 평가방법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자 : 시군 담당자
 - 평가내용 : 서류 누락, 신청자격 및 적정성 검토

○ 심사평가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평가

- 평 가 자 : (서류심사) 특별시 그린바이오팀장, 전남바이오진흥원 등 3명
(발표평가) 심사위원 5명 구성
- 평가방법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의거 점수산정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기대효과 등
- 제출자료 :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료 제출 * 발표평가 일정별도 안내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 내 희망하는 프로그램 1개 이상 신청 필수(4개까지 선택 가능)

프로그램	지원 내용 (예시)	비고
컨설팅	기술·경영·연구개발·마케팅·사업화 전략, 법률 자문 등	
시제품 제작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지식재산권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비용 등	
제조공정 고도화	GMP·CGMP 수준 공정 고도화 지원	
제품 고도화	제품 성능 개선 및 기능 추가 등	
공정 고도화	에너지 절감, 자동화·디지털화 기반 공정 고도화, GMP 등 양산단계 공정 설계	
디자인, 마케팅	포장 디자인, 기업 브랜딩(BI/CI), 브랜드 개발, 영문 홍보자료, 홈페이지,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	
박람회(전시회)	전시회 참가비, 부스 설치비, 통역비,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등	
VC/AC	그린바이오 IR데이 참가 지원, 국내외 VC/AC 1:1 매칭, 발표자료 제작, 사전 피칭 리허설 등	
IR 자료 제작	IR 피칭자료(PPT) 및 기업소개서, 요약집 등 제작, 영문화 자료 제작 포함	
IR 컨설팅	IR 피칭 전략 수립 및 발표 역량 강화, 기업 가치 산정 및 벤처 투자자 대응 전략 지도	
IPO	상장 전략 및 IPO 절차 컨설팅, 지정 자문인·증권사 매칭 지원 등	
시험·인증·임상	기능성/안전성/유효성 평가, GMP, GLP 등 국내·외 인증, 임상 등 지원	
R&D	R&D 지원(연구인력 인건비 등)	

※ 상기 제시된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신청기업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타 항목 추가해 사업 신청 가능

※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일부 프로그램 '실패' 판정이 나올 시 해당 프로그램 사업비 환수 가능

□ 행정 사항

- 시군은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한 내 신청 : '26. 8. 19.까지
- 사업계획서 등 증빙 내역 완비 후 제출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자료 준비 철저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기준 미달 시 대상에서 제외함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붙임 확인)
2	예비신청서 (5부 제출)	
3	참여확약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6	사업계획서 (5부 제출)	
7	사업자등록증	별도
8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최근 3년(2023~2025)기업 재무제표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우선 제출 후 재무제표 필수 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2	최근 3년 수출입 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해당 있을 시)	
13	기업, 기술, 제품 등 소개 자료(인증 및 확인서, 팸플릿 등) (해당 있을 시)	

※ 신청서류는 모집공고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공통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대표자·회사 관련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고, 첨부 여부에 체크하여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뒤에 해당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첨부할 것

구분	서류명		제출형식	제출확인 (√표시)
공통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1)		직인 후 제출	☐
	예비신청서 (공통 2)		직인 후 제출	☐
	참여확약서 (공통 3)		직인 후 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공통 4)		직인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공통 5)		직인 후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 1)		HWP, PDF 파일 각 1부	☐
기초 자료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6. 8. 4. 이후 발급분)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
	최근 3년(2023~2025) 기업 표준 재무제표 - '25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추후 선정 시 재무제표 필수 보완 필요		사본	☐
기타 자료 (해당시)	최근 3년 수출입 실적증명서		해당시	☐
	기업, 기술, 제품 등 소개자료 (인증 및 확인서, 팸플릿 등)		해당시	☐

위와 같이 신청(부속) 서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_____

대표자 : _____ (인)

참 여 확 약 서

당사는 「그린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 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규정 및 운영 요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지원 실적 요청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당사는 3년간 추적조사(고용, 매출, 수출액 등)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업평가 시 감점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5. 기 제출한 “모든 제반서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승인을 통하여 시행한다.
6.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한 잔액, 사업목적 외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반납한다.
7. 세부사업별 지원을 받는데 있어 동일 사업 중복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중복지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사업비를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공통 4」 자격 적정성 확인서

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기존 개발 등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한 기술 개발 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협회, 단체, 기관 등의 대표자 및 담당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성과물, 제반서류,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미납 및 임금 체불 중인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협회, 단체, 기관 등의 대표자 및 담당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 절차개시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 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이 때,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2년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기업 사업 신청 복수 지원 여부		
▶ 사업 신청 시 2개 이상 프로그램 복수 지원 여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자료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공모) 신청 및 평가 후 선정에 필요한 본인 확인과 공모 선정 후 지원금 지급에 따른 회계 시스템의 등록 및 계좌번호 확인, 그리고 비용 지급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등의 원천징수 신고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계좌이체 거래은행 정보	거래은행명,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공모 선정 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 1의 피보험자수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의 일로부터 해지 요청일까지(단, 마지막 거래로부터 5년간 거래실적이 없으면 자동 삭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 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영수증에 기입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영수증의 성명, 계좌번호, 예금주
- 제공 목적 : 사업 공모 신청 본인 확인, 선정 후 지원금 지급 목적 등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본인 계좌 확인 및 원천징수 처리를 위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 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인)

그린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본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린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의 통계 분석 및 선정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등 기재항목을 공란으로 둘 경우 없음으로 간주하고 평가되기 때문에 기재 내역 미 작성 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 정보

사업담당자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주력제품				
회사 주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	1988. 00. 00.	대표연락처	대표자명		
기업유형	☐ 영세기업(상시근로자수 1 ~ 9명) ☐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 ~ 49명) ☐ 중기업 (상시근로자수 50 ~ 299명) ☐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300 ~ 999명)				
사업장 소재지	1) 본사 ()	보 기	①서울 ②전남광주 ③부산 ④대구 ⑤인천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경북 ⑭경남 ⑮제주		
	2) 공장 ()				
	3) 부설연구소 ()				
홈페이지 주소	(해당시 작성)				

2 기업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상)	비고
총매출액(원) 수출액포함					연말결산 기준
직접수출액	원				해당기업 작성
	USD				
간접수출액	원				간접수출실적 기준
	USD				
수출액 합계	원				직접+간접 수출액
	USD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종업원수(명)					12월 4대보험 가입기준
신규채용(명)					해당연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판매처별 매출액 비중 (전년도 기준)	국내 일반소비자	국내 거래기업	해외 일반소비자	해외 거래기업	
	%	%	%	%	

4

세부 사업 계획

※ 공통서식

지원내용	예)신제품 개발, 수출 및 인증 지원			
과제명(프로젝트명)	예) 초기 창업기업 육성지원			
총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합계	특별시 (25%)	시군비 (35%)	자부담 (40%)
수행기간	예) 협약일로부터 ~ 2027년 10월 31일			

사업개요

※ 사업 목적 및 목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기술

- ☐
 그린바이오 분야·핵심기술(천연물·식품소재·미생물·종자·곤충·동물용의약품)

-
- ☐
 사업 목적

-
- ☐
 사업 목표

-
- ☐
 지원의 필요성

-

사업내용

※ 구체적인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술

- ☐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내용

-
- ☐
 기술개발·실증 범위(R&D~사업화 단계) 및 추진방식

-
- ☐
 인허가·인증 추진계획(품목허가·기능성 인정·GMP 등)

-

시장조사

※ 목표시장, 판매대상, 관련시장 동향, 매출성장 가능성 등을 기술

- ☐
 목표시장 및 판매대상

-
- ☐
 시장 규모·성장성 및 수요 전망

-

☐ 경쟁현황 및 관련시장 동향

-

☐ 판로·거래처(B2B 포함) 확보방안

-

사업준비현황 ※ 기업에서 사전에 준비하였거나 진행하였던 개발, 계약 등 진행사항을 기술

☐ 사전 준비·진척 현황(시제품·시험데이터·계약 등)

-

☐ 산·학·연 및 기관 협력체계(공동연구·기술이전 등)

-

사업결과물 및 향후 계획 ※ 지원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 및 향후 계획, 활용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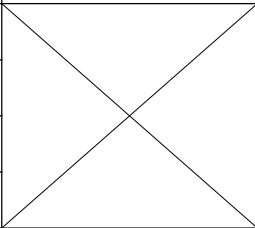
☐ 사업결과물 및 기술사업화 실적(특허·인증·품목허가 등)

-

☐ 향후 활용·확산 계획(지역 농가·기관 연계·상생 포함)

-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구 분		사업화 년도			
		(25)년 (사업시작 전년도)	(26)년 (사업종료 해당 연도)	(27)년 (사업종료 후 1년)	(28)년 (사업종료 후 2년)
매출 (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신규 고용 창출(명)					
매출성장도(%)					
수출향상도(%)					
신제품 개발 건수					
신시장 확보 건수					
특허 출원·등록 건수					
인증·품목허가 취득 건수					
기술이전·라이선싱 건수					
국산 원료 대체·계약재배 규모					

사업추진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술

번호	사업추진내용 및 방법	추진 일정 (월)								비고
1	세부내용 기입									
2										
3										
4										
5										
6										

지원금 사용 계획 ※ 지원금의 사용 세부 내역을 상세히 기술(예시)
※ 예시는 참고자료이며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예산목을 배정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예산목)	내역	단가(원)	수량	금액(원) (C) (C=A+B)	사업비(원)	
					기업 지원금(A)	기업 부담금(B)
원물 포함 재료비 (기업지원금 기준 30%이하)	◦ 재료구입비 - 효모추출물 - 구체적으로 작성	45,000	100kg	4,500,000	4,000,000	500,000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 1종 제작 ◦ 포장용기 및 디자인 제작 - 용기 - 파우치 ※ 인건비 및 출장비 집행 불가 ※ 포장재 제작 시 목형 및 금형 집행 불가 ※ 설비 구입 등 재산성 품목 구입 불가	5,500	1,000개	5,500,000	5,500,000	-
마케팅비	◦ 홍보물(카드로그 제작)	350	1,000부	3,500,000	3,000,000	500,000
연구 활동비	◦ 영양성분 ◦ 특허출원	270,000	10건	2,700,000	2,500,000	200,000
회계감사 (필수)	◦ 지정 회계사무소 안내 예정 ※ 기업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300,000	1회	300,000		300,000
총계				16,500,000	15,000,000	1,500,000

※ 참고사항

1. 기업 부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2. 사업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별도로 지출)
3. 사업비 집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미발행시 불인정/사업비카드 발급시 영수증 대체)
4. 회계감사 기업 자부담 300천원은 필수입니다.
5. 사업비 통장을 활용한 사업비 카드(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개인 및 법인 통장 간 이체 포함) 개인적으로 활용하다 적발될 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변경 관련

1. 중간진도 점검 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업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총 사업비 10% 이하의 경우 수행기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단, 사업 아이템 및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중간 평가위원회의 승인 필요), 사업 종료일 14일 전까지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변경승인 공문 수령 후 집행 가능).

※ 산정 가능 항목 예시

구분	사업비 예산목	산정 예시	비고
1	원 · 부재료비	원부재료비	기업지원금 기준 30% 이하 산정
2	광고홍보비	온라인 마케팅, 클릭광고, 바이럴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	
3	홍보물 제작비	홈페이지, 브로셔, 카탈로그, 상세페이지, 홍보영상 등	판촉물 산정 불가
4	시제품 개발비	포장용기, 스티커라벨, OEM비용, 제품포장박스, 사진촬영 등	동판비, 목형비 산정 불가
5	디자인비	포장지 디자인 및 리뉴얼, 회사 CI, BI 제작, 브랜드 스토리 제작 등	
6	연구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포함)	영양성분검사, 중금속검사, 자가품질검사, 장비사용료, 지식재산권 출원료, 등록료, 제품개발 컨설팅, 산학협력단 연계 등	
7	수출선적비	CIF, FOB 등	
8	인증취득비	HACCP, ISO, FSSC, HALAL 컨설팅비 등	
9	시험분석 · 인허가비	이화학 · 안전성 · 기능성 평가, 품목허가 · 등록 수수료, 성분 · 중금속 검사	그린바이오 특화
10	실증 · 파일럿비	파일럿 스케일업, 실증포 · 시험재배, 공정검증 · 시험생산	재산성 품목 제외
11	지재권 확보비	특허 · 품종보호 출원 · 등록료, 기술이전 자문비	

* 해당 가이드라인은 예시로 수행기관과 협의된 사업비는 산정 가능